

2015. 1. 9.(금)



## 보도자료

2015년 1월 9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박진희 과장(☎2110-1280)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김동섭 사무관(☎2110-1284) dodo@kcc.go.kr

# 2014년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실시

## - 중소PP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계열PP와 개별PP를 분리하여 평가 -

올해부터 중소 채널사용사업자의 콘텐츠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지상파, SO, 위성 등의 계열PP와 개별PP를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하여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평가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종교 PP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9일 3회째를 맞는 등록대상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실시 방안을 밝혔다.

이번 평가방안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구성된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위원장: 이기주)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향후 평가 결과 검증 및 우수사업자 선정기준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방송콘텐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콘텐츠 인력 전문성, 제작비,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제작, 국내외 유통, 국내외 시장 수익성, 심의규정 준수여부, 수상실적 등 14개 항목 19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것도 동일하다.

다만, 제작경쟁력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PP의 등록된 공급분야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정하여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심의규정 준수여부 및 수상실적 평가항목의 감점/획득 점수를 지난해보다 2배로 상향 조정하여 공익성 부문 평가의 변별력이 높아지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평가 결과는 기존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 공개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총점과 3대 요인별 우수등급 이상 채널에 대해서만 공표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결과를 공표해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는 오는 2015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우수상'을 시상할 계획이다.

붙임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붙임]

## 등록대상 방송사업자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개요

### □ 경과 사항

- '14. 11. 13.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 구성
  - ※ 이기주 위원(위원장), 방송(3), 법률(1), 경영/회계(1)분야 외부전문가로 총 6인
- '14. 12. 29.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위원회, '14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 심의
- '15. 1. 8. 방송통신위원회, '14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방안 보고

### □ 평가대상 사업자

-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주된 사업분야로 하는 방송사업자 중 방송평가를 받지 않는 방송채널사업자(이하 등록PP)
  -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콘텐츠 사업은 텔레비전 방송콘텐츠와 경쟁력 요소가 상이하므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승인사업자(EBS, 스카이라이프, CBS, 평화방송, 불교방송, YTN 등)가 운영하는 등록PP는 회계분리의 어려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평가제도 취지를 고려, 종교PP는 평가대상에서 제외(개선사항)

### □ 평가대상 기간 :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평가대상 기간' 준용)

### □ 평가절차(개선사항)



## □ 평가항목 및 방법

- 제작역량 구성요인인 자원 경쟁력, 프로세스 경쟁력, 성과 경쟁력을 총 14개 항목으로 세분해 평가

[표1]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세부 평가항목

구성요인	세부 구성요인	평가항목(14개)
자원 경쟁력	인적자원 경쟁력	①콘텐츠 인력 전문성, ②콘텐츠 인력 계발, ③콘텐츠 인력 보상
	물적자원 경쟁력	④자기자본, ⑤제작비, ⑥콘텐츠 지적재산권
프로세스 경쟁력	제작 경쟁력	⑦신규 콘텐츠 제작, ⑧신기술 콘텐츠 제작
	유통 경쟁력	⑨국내시장 유통 역량, ⑩해외시장 유통 역량
성과 경쟁력	경제적 성과 경쟁력	⑪국내 시장 수익성, ⑫해외 시장 수익성
	사회적 성과 경쟁력	⑬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⑭콘텐츠 수상실적

- 중소PP의 제작역량 고취를 위해 계열PP와 개별PP로 그룹을 분리하여 평가(개선사항)
  - 계열PP에 비해 프로그램 제작환경이 열악한 중소·개별PP의 프로그램 제작 경쟁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계열/개별PP를 구분하여 평가
- 채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콘텐츠 인정기준 강화(개선사항)
  -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신기술 콘텐츠 제작” 평가항목의 경우, 해당 PP의 등록된 공급분야와 일치하는 콘텐츠만 인정함으로써 해당분야 전문채널로서 정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
-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개선사항)
  - “콘텐츠 내용심의 규정 준수여부” 및 “콘텐츠 수상실적” 평가항목의 감점/획득 점수를 2배로 상향 조정

※ 내용심의 규정 준수여부(현행 1점~15점 감점 ⇨ 2점~30점 감점), 콘텐츠 수상실적(현행 2점, 5점, 10점 획득 ⇨ 4점, 10점, 20점)

## □ 평가등급

- 매우우수(15%), 우수(25%), 보통(35%), 미흡(20%), 매우미흡(5%) 등 5개 등급으로 평가

## □ 결과 공개

- 미흡평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 총점 및 3대 경쟁력 요인별(자원경쟁력, 프로세스경쟁력, 성과경쟁력) 우수등급 이상만 공개

## □ 결과 활용방안

-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심사에 연계
  -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에 대한 사업자 참여를 높이고, 미래부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 심사에 평가결과 반영
- 방송대상 특별상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5년 방송대상 특별상 “제작역량 우수상” 수여
- 평가결과를 공표하여 시청자 및 SO의 채널선택 기준으로 활용

## □ 향후 일정

- 평가자료 접수 및 분석 : '15. 1월.~'15. 2월
- 평가결과 및 우수상 선정기준 등 평가위원회 심의 : '15. 2월말
- 방송통신위원회 보고 및 공개 : '15. 3월초

붙임 2014년도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붙임〉

## 2014년도 평가항목 구성 및 배점

구성 요인	세부 요인	세부 평가 항목(14개)	세부 평가 지표(19개)	배점
자원 경쟁력 (350)	인적 자원 (100)	인력 전문성	콘텐츠 전문인력 비중	50
		인력 개발	콘텐츠 직무관련 교육비	25
		인력 보상	콘텐츠 인력 인건비	25
	물적 자원 (250)	자기자본	자기자본 비중	50
		제작비	제작비 규모	75
			제작비 비중	75
콘텐츠 지적재산권	콘텐츠 저작권 보유	50		
프로세스 경쟁력 (400)	제작 (350)	신규 콘텐츠 제작	자체, 공동/외주제작, 구매후 제작 콘텐츠 <b>(해당 공급분야 콘텐츠만 인정)</b>	300
		신기술 콘텐츠 제작	신기술 콘텐츠 <b>(해당 공급분야 콘텐츠만 인정)</b>	50
	유통 (50)	국내시장 유통 역량	국내시장 판매량	30
		해외시장 유통 역량	해외 견본시 진출	10
			해외시장 판매량	10
성과 경쟁력 (250)	경제적 성과 (150)	국내시장 방송사업 수익	방송사업수익 규모	50
			콘텐츠 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50
		해외시장 방송사업 수익	방송사업수익 규모	25
			콘텐츠인력 1인당 방송사업수익 규모	25
	사회적 성과 (100)	콘텐츠 내용 심의규정 준수여부	방송심의의 관련 제규정 준수여부 <b>(건수별 제재점수 2배 상향 조정)</b>	50
		콘텐츠 수상실적	콘텐츠 수상실적 <b>(건수별 획득점수 2배 상향 조정)</b>	50
총계				1,000